

공개용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Stainless Steel Plate)
덤핑방지관세 부과 3차 종료재심사 최종판정 의결서
(조사번호 : 구제 23-2023-1호)

2023. 12. 21.

무 역 위 원 회

안내 사항

< 비밀취급 자료 관련 >

-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이 비밀취급을 요청한 자료, 관세청 수입통계자료, 정보유통기업의 유료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국내 동종물품 내수판매량 등은 아래와 같이 기준년도 값을 설정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증감률을 반영한 환산값을 제시하되, 기준년도 값과 환산값은 본문과 표에 "12,345"(기울임, 밑줄)의 형태로 표시함
 - 기준년도 값 : 금액과 물량 모두 1,000
- 연도별이 아닌 분기 또는 반기별 내수판매량 등의 자료가 있는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이 전년동기 값은 기준연도와 동일한 값으로 재설정하여 차년 증감률을 반영한 환산값을 제시하되, 위와 마찬가지로 본문과 표에 "12,345"(기울임, 밑줄)의 형태로 표시함
 - 예 : 마지막 연도가 '21년 상반기까지인 경우, 전년동기('20년 상반기) 값을 기준연도와 동일하게 금액과 물량 1,000으로 설정
- '가격 차이' 자료는 공개될 경우, 상대방의 가격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되, 증감률을 표시함
- 시장점유율, 국내 동종물품 가동률, 물량 비중, 원가구성비 등 비율(%)로 표시되는 자료는 공개하지 않되, 증감률(%의 경우에는 %p로 표시)을 표시함
 - 예 : 10.0% → 15.0%로 증가한 경우 5.0%p로 표시
- 기준년도 값이 음의 부호('△')인 경우에는 '적자'로 표시하고 다음 연도에는 '적자 확대', '흑자 전환' 등으로 표시함

무 역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의결 제2023-17호
조 사 번 호 구제 23-2023-1호
조 사 건 명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3차)
요 청 인 주식회사 디케이씨

(본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고현길 98번길 66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타워 36층

대표이사 곽동린

대리인 법무법인 올림

담당변호사 김태우

더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컨설팅

공인회계사 김종탁

피 요 청 인 <일본>

1. NIPPON STEEL Stainless Steel Corporation (이하 "NSSC")

2. JFE Steel Corporation (이하 "JFE")

3. Nippon Yakin Kogyo Co., Ltd (이하 "Yakin")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중

공인회계사 기정석

4. 그 밖의 공급자

조사대상물품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Stainless Steel Plate)

HS 코드 : 7219.21.1010, 7219.21.1090, 7219.21.9000,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의 결 일 2023. 12. 21.

상기 안건에 대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는 WTO 반덤핑협정 제11.2조 및 관세법 제56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위원회는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지라도,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이 유

주식회사 디케이씨가 2023.1.11.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한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건(재심사개시 : 2023.3.10.)에 대하여, 그동안 무역조사실(이하 “조사실”)은 요청인, 공급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질의서에 의한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와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 확인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사를 하고,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 재심사 최종조사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지라도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판정한다.

I. 배경

요청인은 2023.1.11.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기간 연장을 위한 3차 종료재심사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였고, 위원회는 2023.3.3.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본 건에 대한 재심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개시를 결정하고 2023.3.10. 이를 관보에 게재하였다.

그 동안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조치 현황은 기획재정부장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결정에 따라 원심판정으로 2011.4.21.부터 2016.4.20.까지 13.17%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었고, 1차 종료재심사 판정으로 2016.12.6.부터 2019.12.5.까지 13.17%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었으며, 2차 종료재심사 판정으로 2020.7.14.부터 2023.7.13.까지 13.17%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었다. 그리고 동 조치는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8항¹⁾에 따라서 재심사가 진행 중인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6.1.1조²⁾ 및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³⁾에 따라, 2차 종료재심사 대상공급자였던 일본의 NSSC, JFE, Yakin을 재심사대상 공급자로 선정하여 2023.3.15. 해외공급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
- 1)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8항 : 제1항 제2호의 사유(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 인하여 덤핑 및 국내 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재심사를 하는 경우 재심사 기간 중에 당해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그 재심사 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된다.
 - 2) WTO 반덤핑협정 제6.1.1조 : 반덤핑 조사에 사용되는 질의서를 받는 수출자 또는 외국의 생산자에게 응답을 위해 최소한 30일이 주어진다. 동 30일 기간의 연장을 위한 어떤 요청에 대하여도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하며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이러한 연장은 가능한 한 허용되어야 한다.
 - 3)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1항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국내 생산자·공급자·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급자에게 덤핑사실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질의를 하는 때에는 회신을 위하여 질의서 발송일 부터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하며 공급자가 사유를 제시하여 동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실은 2023. 3.28.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인 주식회사 디케이씨(이하 “디케이씨”), 에스엠스틸 주식회사(이하 “SM스틸”)에 국내생산자 질의서를 발송하였고, (주)영광스텐, (주)화신에스티, (주)세아제강, 대선조선(주), 범한 메카텍(주), (주)성광벤드, 주식회사 지에스엔텍, 주식회사 태광 등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질의서를 발송 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WTO 반덤핑협정 제6.2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8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23.9.21. 본건 재심사의 요청인 등 이해관계인들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본 건 재심사와 관련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6.9조에 따라, 최종판정 전에 결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이 포함된 수정된 중간보고서 공개본을 23. 11. 20 이해관계인에 송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또한, 조사실은 2023.11.22. 최종 덤핑률 산정내역을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2023.11.22.~11.29.)를 제공했으며, 2023.12.4. 이해관계인 회의를 실시하는 절차를 거쳤다.

II.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및 국내산업의 범위

1. 재심사대상물품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제3항4)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보에 게재된 재심사대상물품⁵⁾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61호(2023.3.10.)⁶⁾에 따르면, 재심사대상물품은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801호(2020.7.14.)⁷⁾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을 말한다.

조사보고서⁸⁾에 의하면, 재심사대상물품의 재심사범위는 스테인리스강⁹⁾ 중에서 두께가 8mm이상 80mm이하이고, 너비가 1,000mm이상 3,270mm이하인 열간압연 강판으로서 압연, 열처리, 냉각 및 후처리과정을 거친 완제품¹⁰⁾이다. 단, 코일형태의 제품 및 2차 재심에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제품은 재심사범위에서 제외된다. 재심사대상물품에

4)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약속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3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 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 요청자,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5)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무역위원회고시 제2022-2호) 제2조제3호: '재심사대상물품'이란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개시결정을 하여 관보에 게재한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대상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

6)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7)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8) 조사보고서 p.3

9)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5 이상인 합금강

10) 스테인리스 Slab(강편, 납작하고 긴 직사각형 모양의 강판)를 열간상태에서 압연한 후 생산된 스테인리스 Black Plate제품(열처리공정, 산세공정을 거치지 않은 제품)은 반제품 상태이므로 재심사대상물품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해당하는 관세품목분류번호¹¹⁾는 HSK 7219.21.1010, 7219.21.1090, 7219.21.9000,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이다.

재심사대상물품의 용도와 품질수준을 결정하는 물리적 특성에는 인장강도, 항복점, 연신율 등이 있으며, 동 물품은 석유화학, 조선, 강관, 담수, 발전 및 반도체 등의 산업용 원자재로 사용되고 있다.

재심사대상물품은 국내 수입자가 수입하여 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출자가 직접 수요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국내 동종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및 WTO 반덤핑협정 제2.6조에 따르면, “동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조사보고서¹²⁾에 의하면 국내생산품은 재심사대상물품과 비교하여 물리적 특성, 용도 및 구성요소, 제조공정 및 유통경로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내 생산자, 수요자 및 수입자는 국내생산품과 재심사대상물품은 물리·화학적 특성 등에서 차이가 없거나 유사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수요자와 수입자는 가격 시황에 따라 재심사대상 물품과 국내생산품을 혼용하여 사용하거나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1) 관세품목분류번호가 재심사대상물품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재심사대상물품의 정의, 물리적 특성 및 용도 등을 감안하여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다.

12) 조사보고서 pp.5~7

따라서, 위원회는 국내생산품과 재심사대상물품 간 물리적 특성, 용도 및 구성요소, 제조공정 및 유통경로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원심과 1차, 2차 재심에서도 국내생산품과 재심사대상물품을 동종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해관계인의 품질과 소비자 평가를 종합하여 본 결과 국내생산품은 재심사대상물품과 동종 물품인 것으로 판단한다.

3. 덤핑방지관세 부과제외 요청 검토

조사보고서¹³⁾에 의하면, 피요청인은 재심사 대상물품 중 7개 강종에 대하여 반덤핑관세 부과제외를 요청하였다. 6개 강종은 일본측 공급자중 NSSC가 신규 개발한 제품으로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하고, 한국 수요기업의 안정적인 공급 요청이 있으며, 1개 강종은 요청인의 국내생산실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과제외를 요청하였다.

조사실은 검토 결과, ASTM N08800, ASME N08800, ASTM N08810, ASME N08810, ASTM N08811, ASME N08811 등 6개 강종은 이미 부과제외 중인 강종과 동일 또는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국내생산 실적 및 계획이 없는 반면, JIS SUS303 강종은 국내생산 실적이 있거나 생산 가능, 또는 국내생산 중인 강종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위원회는 이미 부과제외 중인 강종과 동일 또는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국내 생산 실적 및 계획이 없는 ASTM N08800, ASME N08800, ASTM N08810, ASME N08810, ASTM N08811, ASME N08811 강종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13) 조사보고서 p.8

그러나 국내생산 실적이 있거나 생산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JIS SUS303 강종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4. 국내산업의 범위

조사보고서¹⁴⁾에 의하면, 조사실이 해당 산업의 주무부서(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에 확인한 결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는 재심사 요청인인 디케이씨와 SM스틸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조사실은 동 조사건의 원심 요청인이면서 3차 종료재심사 조사의 요청인인 디케이씨가 국내 총생산량의 65% 이상을 생산하고 있고,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내에 재심사대상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없으며, 재심사대상물품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관세법시행령 제5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디케이씨를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범위에 포함하였으나,

SM 스틸은 국내 동종물품의 국내 생산량 중 30% 미만을 차지하나 조사실에 질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고, 공청회 이후 제출한 자료가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을 조사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국내 산업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14) 조사보고서 pp.9~11

Ⅲ.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위원회는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덤핑사실 여부, 재심사대상물품 수입물량의 변동, 공급국의 생산능력 및 수출여력, 제3국의 수입규제조치 현황 등을 분석하고 공급자별로 산출된 덤핑수준을 검토하였다.

1. 덤핑사실

가. 조사경과

조사보고서¹⁵⁾에 의하면, 조사실은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WTO 반덤핑협정 제6.1.1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피요청인들에게 40일 이상의 답변기간을 정하여 2023.3.15.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또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WTO 반덤핑협정 제6.8조¹⁶⁾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덤핑률을 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통보하였다.

조사실은 2023.4.5. 모든 피요청인들이 제출한 조사참여 신청서를 확인하였으며, 피요청인들 중 NSSC는 2023.4.17. 답변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조사실은 연장요청 사유를 검토하여 답변기한을 2023.5.10.로 2주간 연장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15) 조사보고서 p.20

16)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이해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내에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달리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입수가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예비 및 최종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

조사실은 2023.5.10. NSSC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인터넷에 공개된 회사 일반현황 자료만 제출되었고, 덤핑의 지속 및 재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수적인 핵심자료인 생산원가, 내수판매, 수출가격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조사실은 2023.4.26. JFE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인터넷에 공개된 회사 일반현황 자료만 제출되었고, 덤핑의 지속 및 재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수적인 핵심자료인 생산원가, 내수판매, 수출가격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조사실에 따르면, Yakin은 조사참여 신청서는 제출했으나, 답변기한 연장 요청이 없었으며, 답변서 및 일체의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다.

조사실은 2023.9.25. NSSC에게 미제출 자료와 관련하여 덤핑의 지속 및 재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수적인 핵심자료인 생산원가, 내수판매, 수출가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재요청하였다. 그러나 2023.10.10.에 제출된 답변서에도 생산원가, 내수판매, 수출가격 등의 핵심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조사실은 2023.11.22. 최종덤핑률(안) 및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하고 의견제출의 기회(2023.11.22.~11.29.)를 가졌으며, 2023.12.4. 이해관계인 회의를 개최 하였다.¹⁷⁾

17) 조사실에 따르면, NSSC는 재심사대상기간 중 한국으로의 수출이 없었으므로, 덤핑조사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의견을 조사실로 통지했으며, JFE는 덤핑률 산정 내용 등에 대해 의견이 없음을 조사실에 통지하였고, Yakin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나. 덤핑사실 여부

위원회는 조사실의 덤핑사실 조사가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및 부속서 218)19),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1) NSSC(NIPPON STEEL Stainless Steel Corporation)

조사보고서²⁰⁾에 의하면, NSSC(이하, 피요청인)는 일본 도쿄에 소재하고 있으며, 재심사 대상물품인 스테인리스스틸 후판과 냉연, 열연, 코일 등을 생산, 판매하는 스테인리스스틸 전문 생산회사로서, 최대 주주는 일본제철 주식회사²¹⁾로 조사되었다.

조사실에 따르면, 피요청인은 재심사대상기간 중 한국으로의 수출이 없었으므로, 덤핑조사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²²⁾하였다.

18)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1조 : 조사개시후 가능한 한 조속히 조사당국은 모든 이해당사자로부터 요청되는 정보와 이해당사자가 회신시 이러한 정보를 구성하는 방법을 상세히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당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정보가 제공되지 못할 경우, 국내산업에 의한 조사개시 신청서에 들어 있는 내용들을 포함, 이용가능한 사실을 근거로 당국이 자유로이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가 알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9)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 : 당국이 조사개시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를 포함하여 2차적인 출처로부터의 정보를 기초로 정상가격에 관한 조사결과를 포함한 판정을 내려야하는 경우, 당국은 특별한 신증을 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당국은 가능하다면 공표된 가격표, 공식 수입통계 및 세관보고서 등과 같이 다른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 및 조사과정에서 다른 이해당사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점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해당사자가 협조를 하지 않고 이로 인해 관련정보가 당국에 입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상황이 그 당사자가 협조하였을 때보다 그 당사자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하다.

20) 조사보고서 pp.22~26

21) 日本製鐵 株式會社

22) 이해관계인 회의 양측 발언 요지(2023.12.4.)

- (NSSC) 재심사대상기간 중 한국에 수출하지 않았으므로, 덤핑조사가 성립될 수 없으며, 필요한 범위 내 회사 일반정보 등의 자료를 제출했으므로, 조사 비협조 및 자료 제출 거부로 볼 수 없어 이용가능한 자료 사용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였다.

- (요청인) NSSC가 대한민국 수출이 없다는 이유로 덤핑마진 계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조사실이 WTO 반덤핑협정에 근거하여 이용가능한 자료로 덤핑마진을 계산한 것은 타당하며, 덤핑마진이 산출될 수 없다는 피요청인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최소한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덤핑률 산정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했다는 스스로의 주장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 수출이 없다는 사실은 조사실이 총매출, 조사·비조사대상물품의 매출·물량, 내수 및 한국·제3국 수출 금액·물량을 비교·분석하여 완전성 검증이 된 후에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실은 이와 관련한 피요청인의 근거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요청인 주장의 입증 여부와는 별개로 조사실은 덤핑방지관세 종료로 인한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덤핑마진과 공급자의 생산·판매·가격 상황²³⁾, 한국과 공급국 및 국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실은 이와 관련한 피요청인의 근거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실사, 한국 수출이 없더라도 조사실은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덤핑마진과 공급자의 생산·판매·가격 상황, 한국과 공급국 및 국제 시장상황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사실은 피요청인이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판단에 필요한 핵심자료인 생산원가, 내수판매, 수출가격 등의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조사실은 질의서 송부시 WTO 반덤핑협정 제6.8조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덤핑률을 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그런데 피요청인이 덤핑마진 산정과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판단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조사실은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²⁴⁾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23) 조사실에 따르면, 제3국 대상공급자의 생산·판매·가격 상황은 제3국 대상공급자가 덤핑방지관세 종료 시 덤핑 재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검토 요소로, 일반적으로 초과 생산능력 및 가동률, 생산량 변동 추세, 재고수준, 내수시장 원가 미만 판매 여부, 내수가격 대비 제3국 수출가격 수준, 한국 시장 판매 비중 변동 추이, 제3국 수출현황 등에 대한 자료가 포함된다.

24)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다른 이해 당사자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점검하기 위해 요청인이 제출한 자료²⁵⁾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조사실은 요청인이 제출한 통계는 규격이 정해져 있는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량과 수입액에 대한 통계가 아님에 따라, 정확한 덤핑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조사실은 원심의 덤핑률이 피요청인의 덤핑가격 등을 일정 부분 활용하고, 현지실사 등의 검증을 통해 조정요소 등을 반영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실은 원심의 덤핑률이 요청서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도출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용가능한 자료로써 원심의 덤핑률인 43.72%를 최종덤핑률로 산정하였다.

위원회는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및 부속서2,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덤핑률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결정한다.

2) JFE(JFE Steel Corporation)

조사보고서²⁶⁾에 의하면, JFE(이하, 피요청인)는 일본 도쿄에 소재하고 있으며, JFE Holdings가 JFE 지분의 xxx%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실은 덤핑방지관세 종료로 인한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덤핑마진과 공급자의 생산·판매·가격 상황²⁷⁾, 한국과 공급국 및 국제 시장

25) 조사실에 따르면, 요청인이 제출한 자료는 일본 철강신문에 공표된 재심사대상기간의 평균 일본 내수 가격과 한국무역협회의 재심사대상기간 재심사대상물품 평균가격 등이다.

26) 조사보고서 pp.26~28

27) 조사실에 따르면, 재심사대상공급자의 생산·판매·가격 상황은 재심사대상공급자가 덤핑방지관세 종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실은 이와 관련한 피요청인의 근거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조사실은 질의서 송부시 WTO 반덤핑협정 제6.8조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덤핑률을 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그런데 피요청인이 덤핑마진 산정과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판단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조사실은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다른 이해 당사자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점검하기 위해 요청인이 제출한 자료²⁸⁾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조사실은 요청인이 제출한 통계는 규격이 정해져 있는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량과 수입액에 대한 통계가 아님에 따라, 정확한 덤핑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조사실은 원심의 덤핑률이 피요청인의 덤핑가격 등을 다른 피요청인인 NSSC의 실제 자료 등을 활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실은 원심의 덤핑률이 요청서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도출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용가능한 자료로써 원심의 덤핑률인 43.72%를 최종덤핑률로 산정하였다.

위원회는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및 부속서2,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덤핑률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결정한다.

시 덤핑 재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검토 요소로, 일반적으로 초과 생산능력 및 가동률, 생산량 변동 추세, 재고수준, 내수시장 원가 미만 판매 여부, 내수가격 대비 제3국 수출가격 수준, 한국 시장 판매 비중 변동 추이, 제3국 수출현황 등에 대한 자료가 포함된다.

28) 조사실에 따르면, 요청인이 제출한 자료는 일본 철강신문에 공표된 재심사대상기간의 평균 일본 내수 가격과 한국무역협회의 재심사대상기간 재심사대상물품 평균가격 등이다.

3) Yakin(Nippon Yakin Kogyo Co., Ltd)

조사보고서²⁹⁾에 의하면, Yakin(이하, 피요청인)은 공급자 개요 및 판매 현황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조사실은 덤핑방지관세 종료로 인한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덤핑마진과 공급자의 생산·판매·가격 상황³⁰⁾, 한국과 공급국 및 국제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실은 이와 관련한 피요청인의 근거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조사실은 질의서 송부시 WTO 반덤핑협정 제6.8조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덤핑률을 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그런데 피요청인이 덤핑마진 산정과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판단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조사실은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다른 이해 당사자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점검하기 위해 요청인이 제출한 자료³¹⁾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조사실은 요청인이 제출한 통계는 규격이 정해져 있는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량과 수입액에 대한 통계가 아님에 따라, 정확한 덤핑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29) 조사보고서 pp.28~31

30) 조사실에 따르면, 재심사대상공급자의 생산·판매·가격 상황은 재심사대상공급자가 덤핑방지관세 종료 시 덤핑 재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검토 요소로, 일반적으로 초과 생산능력 및 가동률, 생산량 변동 추세, 재고수준, 내수시장 원가 미만 판매 여부, 내수가격 대비 제3국 수출가격 수준, 한국 시장 판매 비중 변동 추이, 제3국 수출현황 등에 대한 자료가 포함된다.

31) 조사실에 따르면, 요청인이 제출한 자료는 일본 철강신문에 공표된 재심사대상기간의 평균 일본 내수 가격과 한국무역협회의 재심사대상기간 재심사대상물품 평균가격 등이다.

조사실은 원심의 덤핑률이 피요청인의 정상가격, 덤핑가격 등의 자료를 활용하고, 현지실사 등의 검증을 통해 조정요소 등을 반영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실은 원심의 덤핑률이 요청서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도출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용가능한 자료로써 원심의 덤핑률인 22.53%를 최종덤핑률로 산정하였다.

위원회는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및 부속서2,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덤핑률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결정한다.

4) 그 밖의 공급자

조사보고서³²⁾에 의하면, 조사실은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³³⁾ 및 시행규칙 제17조제2항³⁴⁾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료를 사용한 공급자 등을 제외한 공급자의 덤핑률을 가중 평균하여 덤핑률을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동 조사건은 가중평균 할 수 있는 공급자가 없으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및 부속서2 제7조에 따라,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 22.53%의 덤핑률을 적용하였다.

32) 조사보고서 p.31

33)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34)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 영 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평균 덤핑방지 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급자가 다수인 때에는 공급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2호 : 영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차액 등을 산정한 공급자

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등에 따라, 그 밖의 공급자 최종덤핑률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결정한다.

2. 수입물량의 변동

조사보고서³⁵⁾에 의하면, 조사실은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 변동에 대해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국내산업 답변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조사실은 재심사대상물품의 전체 수입량은 2020년 xxx톤에서 2022년 xxx톤으로 연평균 7.8% 증가하였고,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량은 2020년 xxx톤에서 2022년 xxx톤으로 연평균 22.9% 증가하였으나, 2022년 수입급증의 원인은 포스코 태풍피해와 국내 조선사 수요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였다.

3. 공급국의 생산능력 및 수출여력

조사보고서³⁶⁾에 의하면, 조사실은 일본의 생산능력 및 수출여력에 대해 피요청인 의견서, 국내 생산자 답변서 및 실사자료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조사실은 피요청인들의 2022년 생산능력(xxx천톤)³⁷⁾이 재심사기간 동안 평균 xxx%감소했고, 가동률도 2019년 xxx%에서 2022년 xxx%로 감소했음을 확인하였다.

35) 조사보고서 p.32

36) 조사보고서 pp.32~33

37) 공급사 의견서에 따르면 재심사대상물품 공급자 3사의 2022년 생산능력은 NSSC 약 xxx만톤, Yakin 약 xxx만톤, JFE 약 xxx만톤이다.

4. 제3국 수입규제조치 현황

조사보고서³⁸⁾에 의하면, 조사실은 제3국 수입규제조치 현황에 대해 한국철강협회, 피요청인 자료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조사실은 EU를 제외한 미국, 인도, 중국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 수입규제가 적용 제외되어, 이들 국가로의 수출여건이 개선된다면 한국향 수출 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5.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검토 종합

위원회는 모든 피요청인이 덤핑률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답변서에 기초한 덤핑사실 여부를 검토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피요청인이 제출한 자료로 덤핑률을 산정한 원심에서 덤핑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원심의 덤핑률 이외에는 덤핑이 없다고 판단할 만한 자료나 근거가 없어 덤핑사실이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EU를 제외한 미국, 인도, 중국이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 수입 규제가 적용 제외되어, 이들 국가로의 수출여건이 개선된다면 한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원회는 재심사대상물품에 대한 덤핑방지 조치가 종료될 경우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최종 결정한다.

38) 조사보고서 p.34

IV. 덩핑방지조치 종료시 국내 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1. 국내산업에 미친 덩핑방지 조치의 효과

가. 물량에 미친 영향

조사보고서³⁹⁾에 의하면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량은 2019년 xxx톤, 2020년 xxx톤, 2021년 xxx톤, 2022년 xxx톤으로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22.9% 증가한 바, 2022년 수입급증의 원인은 포스코 태풍피해와 국내 조선업 수요증가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심의 조사개시 이전인 2009년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량은 xxx톤에서 조사개시 이후 2015년 xxx톤까지 크게 감소하였다. 아울러 2009년 xxx톤과 조사대상 기간중 2021년 xxx톤을 비교해 보면 2009년 대비 2021년 수입량은 94.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보고서⁴⁰⁾에 의하면 동종물품의 판매량은 2019년 xxx톤에서 2022년 xxx톤으로 재심사대상기간동안 연평균 3.3% 증가하였고, 기타국물품의 수입량도 2019년 xxx톤에서 2022년 xxx톤으로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5.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소비는 2019년 xxx톤에서 2022년 xxx톤으로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4.4% 증가하였고, 재심사대상물품의 시장점유율은 2019년 xxx%에서 2022년에는 xxx% 증가하였으며, 기타국물품 시장점유율도 2019년 xxx%에서 2022년 xxx%로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은 2019년 xxx%에서 2022년 xxx%로 감소하였으나 덩핑 방지조치 이전(2009년)의 xxx%보다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9) 조사보고서 pp.35~36

40) 조사보고서 p.36

나. 가격에 미친 영향

조사보고서⁴¹⁾에 의하면, 재심사대상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2019년 xxx천원에서 2022년 xxx천원으로 연평균 27.0% 상승하였고,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판매 가격도 2019년 xxx천원에서 2022년 xxx천원으로 상승하여 연평균 14.2% 상승하였다.

재심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은 2020년을 제외하면 증가 추세이고, 가격 차이는 재심사대상물품이 2019년 xxx천원, 2021년 xxx천원, 2022년 xxx천원 지속적으로 높았으며, 재심사대상물품의 가격이 덤핑방지조치 이전(2009년) xxx천원에서 2022년 xxx천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

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피해가 치유 또는 지속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산업의 생산량 및 가동률, 판매 및 재고, 시장점유율, 가격 및 제조원가, 이윤 등의 경영지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1) 생산량 및 가동률

조사보고서⁴²⁾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생산능력은 2019년 xxx톤, 2022년 xxx톤으로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0.2% 증가하였다. 동종물품의 생산능력 증가는 생산설비의 대체, 자동화 추진, 설비의 증설, 신설비의 가동 등으로 인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1) 조사보고서 p.37

42) 조사보고서 p.37

동종물품의 생산량은 2019년 xxx톤, 2020년 xxx톤으로 증가하다가 2021년 xxx톤 감소 후, 2022년 xxx톤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가동률도, 2019년 xxx%, 2020년 xxx% 상승했다가 2021년 xxx% 감소한 이후 2022년 xxx% 상승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판매 및 재고

조사보고서⁴³⁾에 의하면 동종물품의 총 출하량은 2019년 xxx톤에서 2022년 xxx톤으로,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5% 증가했으며 국내 판매량은 2019년 xxx에서 2022년 xxx톤으로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3.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동종물품의 수출량은 2019년 xxx톤에서 2022년 xxx톤으로,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7.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종물품의 기말재고는 2019년 xxx톤에서 2020년 xxx톤으로 증가하였으나 2021년 xxx톤, 2022년 xxx톤으로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4.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시장점유율

조사보고서⁴⁴⁾에 의하면 동종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19년 xxx%, 2020년 xxx%에서 2021년에는 xxx%로 상승하였고 2022년에는 xxx%로 하락한 바, 2022년 시장 점유율이 하락한 것은 2022년 9월 포스코 태풍피해로 인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덩핑방지 조치 이전(2009년)의 xxx%와 비교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3) 조사보고서 p.38

44) 조사보고서 p.39

(4) 가격 및 제조원가

조사보고서⁴⁵⁾에 의하면 동종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2019년 xxx천원에서 2022년 xxx천원으로 상승하여,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4.2% 상승하였다. 동종물품의 톤당 제조원가도 2019년 xxx천원에서 2022년 xxx천원으로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7.5% 증가였는데, 판매가격 대비 제조원가 비중이 2019년에 xxx%이었고, 2022년에는 xxx%로 재료비의 제조원가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이윤

조사보고서⁴⁶⁾에 의하면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산업의 내수부문 영업이익은 2019년 xxx백만원 흑자에서, 2020년 xxx백만원 흑자확대, 2021년 xxx백만원으로 흑자가 감소되었고, 2022년에는 xxx백만원 적자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도 2019년 xxx% 흑자에서, 2020년 xxx% 흑자확대, 2021년 xxx% 흑자감소, 2022년에는 xxx% 적자전환을 기록하였다.

(6) 생산성

조사보고서⁴⁷⁾에 의하면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동종물품 부문 고용인원은 연평균 xxx% 증가했고, 생산량도 연평균 xxx% 증가했다. 총매출액·총부가 가치도 각각 연평균 xxx%, xxx% 모두 증가하였으며, 1인당 생산량도 2019년 xxx톤에서 2022년 xxx톤으로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5% 증가했고, 1인당 매출액도 2019년 xxx백만원에서 2022년 xxx백만원으로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5.8% 증가하였으며, 1인당 부가가치는 2019년 xxx백만원에서 2022년 xxx백만원으로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6.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5) 조사보고서 p.40

46) 조사보고서 p.40

47) 조사보고서 p.41

(7) 고용 및 임금

조사보고서⁴⁸⁾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고용인원은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생산직은 xxx%, 사무직은 xxx% 증가하여 전체 고용인원은 연평균 12.1% 증가하였다. 1인당 평균 임금은 2020년 전년대비 xxx% 증가 이후 2021년 xxx% 감소, 2022년 xxx% 감소하였고,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4.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8) 설비 투자 및 연구개발

조사보고서⁴⁹⁾에 의하면, 설비투자액은 2019년 xxx백만원에서 2022년 xxx백만원으로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35.5% 감소하였고, 연구개발비는 2019년 xxx백만원에서 2022년 xxx백만원으로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3.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재심사대상물품 이외의 영향

(1) 재심사대상물품을 제외한 수입물품의 물량 및 시장점유율

조사보고서⁵⁰⁾에 의하면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방지조치를 받고 있지 않는 기타 국물품의 수입량은 2019년 xxx톤, 2020년 xxx톤 증가하였고, 2021년 xxx톤으로 감소 후, 2022년 xxx톤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5.4% 증가하였다.

기타국물품 시장점유율은 2019년 xxx%, 2020년 xxx%에서 2021년 xxx%로 감소 후 2022년 xxx%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8) 조사보고서 p.42

49) 조사보고서 p.43

50) 조사보고서 p.44

(2) 재심사대상물품을 제외한 수입물품의 판매가격

조사보고서⁵¹⁾에 의하면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기타국 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2019년 xxx천원, 2020년 xxx천원으로 하락후, 2021년 xxx천원 및 2022년 xxx천원으로 점차 상승하여 연평균 12.8% 상승하였다. 기타국 물품과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차이는 2019년 xxx천원, 2021년 xxx천원으로 기타국 물품의 가격이 높았다가, 2022년에는 xxx천원으로 동종 물품의 가격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국내 수요의 변화

조사보고서⁵²⁾에 의하면 국내소비는 2019년 xxx톤, 2020년 xxx톤으로 증가하다가 2021년 xxx톤으로 감소하였고, 2022년에는 xxx톤으로 증가하여,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4.4% 증가하였다.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은 2019년 xxx톤에서 2020년 xxx톤으로 2.0% 증가, 2021년 xxx톤으로 7.2% 감소후, 2022년 xxx톤으로 16.4% 증가하였으며, 재심사대상 기간 동안 연평균 3.3% 증가하였다.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량은 2019년 xxx톤에서 2020년 xxx톤으로 14.8% 증가, 2021년 xxx톤으로 72.9% 감소하다가 2022년 xxx톤으로 증가하여,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22.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1) 조사보고서 p.45

52) 조사보고서 p.45

(4) 국내산업의 수출실적

조사보고서⁵³⁾에 의하면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산업의 수출량은 2019년 xxx천톤, 2020년 xxx천톤으로 16.4% 감소, 2021년 xxx천톤으로 12.4% 증가, 2022년 xxx천톤으로 15.2% 감소하여 연평균 7.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주요 원자재 가격

조사보고서⁵⁴⁾에 의하면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제조원가 중 원재료(Black plate)의 비중은 니켈의 시세가 물품 수요·생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니켈 고시 가격표를 기준으로 톤당 평균가격이, 2019년 \$xxx, 2020년 \$xxx, 2021년 \$xxx, 2022년 \$xxx이었으며, 재심사조사 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23.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의 연평균 증감률이 '제조원가 중 원재료비', 니켈 고시가격 연평균 증가율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덤핑방지조치의 국내산업피해에 미친 영향 종합

위원회는 덤핑방지 조치가 국내 산업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⁵⁵⁾ 바, 덤핑 방지조치 이전(2009년)과 비교 했을 때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량이 2009년 xxx톤에서 2022년 xxx톤으로 급감했고, 판매가격도 2009년 xxx천원에서 2022년 xxx천원으로 상승했으며, 동종 물품의 생산량도 2009년 xxx톤에서 2022년 xxx톤으로 증가하였고, 국내산업의 시장 점유율도 2009년 xxx%에서 2022년 xxx%까지 상승하였기에, 덤핑방지조치의 국내 산업 피해 구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53) 조사보고서 p.46

54) 조사보고서 p.47

55) 조사보고서 p.48

2.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국내산업피해의 전망

가. 재심사대상물품 공급국의 생산능력

조사보고서⁵⁶⁾에 의하면, 피요청인은 공급자의 생산능력에 대하여 의견서를 통해 일본 공급자인 NSSC, Yakin, JFE 3사의 실제 생산량 및 가동 일수, 병목공정 등에 근거하여 산출한 생산능력 데이터를 제출하였다.

조사실은 공급3사가 제출한 생산능력 데이터가 직접자료이며 이전 2차 종료 재심사 때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이고, 피요청인이 제출한 생산 능력 도출방법이 동종물품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생산자의 생산능력 도출 방법과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조사실은 일본측 공급자 NSSC의 5개 생산공장중 기누우라(衣浦) 공장 생산 설비의 매각처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재심사대상물품의 일본 공급자인 NSSC, Yakin, JFE 3사의 연간생산능력의 합은 2019년 xxx톤에서 2022년 xxx톤으로 재심사 기간 동안 평균 4.1%감소했고, 가동률은 2019년 xxx%에서 2022년 xxx%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재심사대상물품에 공급국의 수출여력

조사보고서⁵⁷⁾에 의하면 조사실은 미국, EU, 중국, 인도 등의 국가의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수입규제조치현황을 조사한 바, 미국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대해서는 적용제외했고, EU는 2019년 7월부터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고 있으며, 중국의 반덤핑 조치는 2023년 7월 일본정부가 WTO 분쟁에서 승소하였고, 인도로의 철강제품 수출시 사전 취득해야 하는 BIS인증에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이 포함되어 있어 미국, 중국, 인도로의 수출여건을 볼때 한국 수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판단하였다.

56) 조사보고서 pp.49~50

57) 조사보고서 p.51

다.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량, 보세구역 현황 및 신규생산자

조사보고서⁵⁸⁾에 의하면, 일본산 재심사대상물품의 對한국 수입량이 덤핑방지조치 이전(2009년) xxx톤에서 2022년 xxx톤으로 50%이하로 감소하였고, 보세구역 반입은 2015년 xxx톤에서 2019년 xxx톤으로 감소하였다가 2022년 xxx톤으로 증가했지만, 전반적으로 반입량이 감소추세이며, 2022년 반입이 증가한 원인은 2022년 9월 포스코 태풍으로 인한 일시적인 증가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반입되었던 강종이 국내 조선업의 수요증가에 따른 400계열 특수강종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조사실은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일본산 재심사대상물품의 강종⁵⁹⁾에 따른 수입 물량추이를 검토한 바, 범용 300계열 강종은 2019년 xxx%, 2021년 xxx%에서 2022년 xxx%로 급감한 반면, 특수 강종 400계열은 2019년 xxx%, 2021년 xxx%에서 2022년 xxx%로 급증했음을 확인하였다.

조사보고서⁶⁰⁾에 의하면 조사실은 국내 보세 구역내 일본산 재심사대상물품의 반입 현황과 관련하여, 보세구역에 대한 지정 및 운영현황을 조사한 바, 기업들은 보세공장 운영 시, 관세 등의 납부 유예 혜택이외 세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반덤핑 관세 부과 종료 후 보세공장 운영은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58) 조사보고서 p.52

59)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은 화학적성분에 따라 모델이 구분되는데 크롬-니켈을 주성분으로 하는 오스테나이트계(304, 316계열 등) 및 크롬을 주성분으로 하는 페라이트계(410, 430계열 등) 등이 있으며, 요청인의 주요 생산품은 오스테나이트계이며 일본산 특수강은 주로 400계열임

60) 조사보고서 p.57

아울러 조사실은 요청인이 덤핑 조치이후 재심사대상물품(두께 8~80mm, 너비 1,000~3,270mm)에 대한 허용공차 수입신고로 관세를 회피하여 수입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검토 한 바, 2차 종료재심사 조사 시 허용공차를 구매자와 판매자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상거래 관행으로 규정하여, 최종 관정에서 고려하지 않았으며, 금번 3차 종료 재심사에서도 2차 종료재심사에서 결정한 사항을 변동시킬만한 사항이 없어 허용공차를 동일한 사유로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조사실은 피요청으로부터, 국내산업의 피해는 동종물품을 생산하고 있는 SM스틸과 요청인과의 경쟁에 의한 피해이며, 신규 국내기업이 대규모 설비를 투자하여 시장점유율을 잠식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SM스틸과 면담(2023.11.1)을 통해 SM스틸의 국내시장 진입등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였고, SM스틸은 요청인과 동일한 강종을 생산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일본산 후판과 경쟁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조사실은 SM스틸로부터 제출된 자료(SM스틸 후판사업부 매출이익 내부자료, 국내 수요자 수주계약서)를 검토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⁶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을 조사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생산능력, 매출액, 판매 및 제고, 가동률, 판매가격, 단위당 제조원가, 전체 영업이익)가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61)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이해관계인의 자료협조요청)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 하는 한 당해 자료를 참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가격 비교 및 전망

조사보고서⁶²⁾에 의하면, 재심사대상물품의 톤당 가격은 2019년 xxx천원, 2020년 xxx천원, 2021년 xxx천원, 2022년 xxx천원으로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국내동종 물품의 톤당 판매가격보다 xxx천원~xxx천원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요청인은 한국향 수출물품의 가격은 국내 동종물품에 비하여 고급형특수강임으로 고가로 판매되어 국내 동종물품과는 경쟁하지 아니하므로 덤핑방지 조치 종료 시에도 피해를 지속 또는 재발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요청인은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은 강종 계열 간 차이가 크고, 요청인은 주로 범용강 304계열 및 316계열을 생산·판매하고 있어 다른 강종의 가격 비교는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하였다.

조사실은 요청인에 일본산 재심사대상물품의 가격이 국내동종물품보다 xxx%~xxx% 높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산이 국내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에 대한 반박 자료를 요청했으나, 요청인이 거의 판매하고 있지 아니하는 다른 강종의 가격 비교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조사실은 관세법 시행령 제 6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료로서 한국 관세청 통관 자료의 가격을 분석한 바, 재심사대상물품의 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보다 2019년은 xxx%, 2021년 xxx%, 2022년에는 xxx% 고가인 상황이며, 공급국의 특수강 공급확대에 대한 kotra의 일본 철강생산에 대한 동향 보고서(2023.11) 및 국내 조선업 등의 일본산 특수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상황으로 인하여 특수강 판매가

62) 조사보고서 p.59

거의 없는 국내산 동종물품과 경쟁이 될 것이라 예상하기 어렵고, 일본산 재심사대상 물품의 가격이 국내산 동종물품 보다 높은 상황이 될 것이라 전망하였다.

3. 국내 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검토 종합

위원회는 재심사대상물품에 대한 덤핑방지조치가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 재심사 대상물품 공급국의 생산능력 및 수출여력, 제3국의 수입규제조치 현황,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가격비교 및 전망 등을 바탕으로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을 검토한 조사실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판단한다.

덤핑방지조치 이전(2009년)과 비교 시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량은 감소되었고 동종 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도 증가하여 덤핑방지 조치의 효과가 있었고, 덤핑방지 관세 부과를 종료 할지라도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재심사대상국가의 생산능력은 재심사대상기간동안 연평균 xxx%감소했으며, 가동률도 2019년 xxx%에서 22년 xxx%로 감소함에 따라 일본산 재심사대상물품의 對한국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판단한다.

또한 EU를 제외한 미국, 인도, 중국은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수입 규제가 적용 제외되어, 이들 국가로의 수출여건이 개선된다면, 한국향 수출규모가 감소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가격 비교 및 전망과 관련하여 국내 수요자의 일본산 고가의 특수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상황과, 특수강 판매가 거의 없는 국내산 동종물품과 경쟁이 될 것이라 예상하기 어렵고, 또한 일본산 재심사대상물품의 가격이 국내산 동종물품 보다 높은 상황이 될 것이라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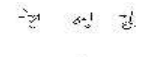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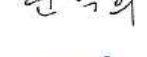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공급국의 생산능력 및 한국향 수출규모가 감소하였고, 공급국에 대한 제3국 수입규제가 축소되었으며, 일본산 재심사대상물품의 가격이 국내산 동종물품의 가격보다 고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덤핑방지 관세부과 종료할지라도 국내 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V. 결론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위원회는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하여, 덤핑 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지라도,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판정하고 의결한다.

무역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2023년 12월 21일

위원장	이재민	
상임위원	천영길	
위원	오수원	
위원	조영진	
위원	이계영	
위원	이종은	
위원	현낙희	
위원	조영재	
위원	강준하	

적용법규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8조 제6호, 제32조

관세법 제51조,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61조, 제63조

WTO 반덤핑협정 제6조

참고자료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최종조사보고서